

폐농약용기류 적정 배출 흐름도

분리배출 흐름도(요약)	세부내용
<p data-bbox="215 425 311 582">1 발생</p>  <p data-bbox="215 683 303 739">농가, 마을</p> <p data-bbox="239 862 686 1019">폐비닐 - 이물질(수분, 흙 등) 최대한 제거후 배출 농약용기류 - 농약을 완전히 사용, 그물망(배추망, 양파망 등) 및 수거함에 배출</p>	<p data-bbox="726 347 1412 380">● 수거대상품목(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)</p> <p data-bbox="726 392 1181 537">① <u>생활폐기물</u> 중 ② <u>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</u> ③ <u>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</u></p> <p data-bbox="726 548 845 582">● 제외</p> <p data-bbox="726 593 1428 840">① 사업장폐기물 ② 농업활동이 아닌 수목 방제 작업 등으로 발생한 농약용기류(골프장, 조경회사 등에서 배출) ③ '농약'표기가 없는 유사용기(착색제, 성장촉진제, 영양제 등)</p> <p data-bbox="726 851 909 884">● 배출방법</p> <p data-bbox="726 896 1428 1041">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,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,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(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)</p> <p data-bbox="726 1052 1428 1086">※ 선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물망에 배출 권고</p>
<p data-bbox="215 1131 311 1220">2 분리배출</p>  <p data-bbox="199 1265 327 1299">마을 공동집하장</p> <p data-bbox="223 1355 622 1411">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(배출자 책임) - 수거가능 장소로 운반보관(5톤 차량 운송가능 장소)</p>	<p data-bbox="726 1120 1244 1153">● 수거 캠페인 추진 시 요청사항</p> <ul data-bbox="726 1164 1428 1411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단에 사전 연락하여 캠페인 일정 조율 - 차량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상 수거량 파악 후 공단에 알림 - 수거사업소로 직접 반입 시 수거처를 단일화하여, 혼란이 없도록 협조
<p data-bbox="215 1500 311 1657">3 수거</p>  <p data-bbox="183 1758 303 1803">한국환경공단</p>	<p data-bbox="726 1467 1348 1500">● 폐농약용기 사업소 반입에 관한 사항</p> <ul data-bbox="726 1512 1428 1859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검수는 수거사업소로 반입되는 폐농약용기류의 10%이상 표본조사 - 유사용기 반입량에 따른 조치 (선별 후 재반입) 표본조사 대상의 중량기준 5% 초과 유사용기 함유시 (감량반입) 표본조사 대상의 중량기준 5% 이하 유사용기 함유시 <p data-bbox="726 1870 1428 1993">※ 1회 반입량이 300kg이상 또는 연간 반입량이 600kg이상 또는 연간반입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수거처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음</p>

분리배출 흐름도(요약)	세부내용
<p>4 전표발행</p> <p>한국환경공단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거처 신규 등록 시 제출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 사항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• 수거전표 수령 후 확인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좌번호를 필히 확인하여,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담당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또는 공단에 연락 (입금 시 오류 발생 방지)
<p>5 수거보상금 지급</p> <p>한국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거보상금 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약플라스틱병: 1,600원/kg 농약봉지: 3,680원/kg - 수거전표에 표시된 일자의 익월 10일경 지급 ※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며, 수거단가와 지급일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
<p>6 처리</p> <p>공단 재활용시설 또는 민간 재활용업체 처리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약용기류 처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약플라스틱병은 재활용업체에서 처리 - 농약봉지는 소각 처리

※ 농약용기와 유사용기 이렇게 구분하세요!

농약용기	유사용기
<p>살충제 : 바탕색은 분홍색</p>  <p>살충제 : 바탕색은 녹색</p> <p>제초제 : 바탕색은 황색</p>  <p>생조제 : 바탕색은 청색</p> <p>비선택성제초제 : 바탕색은 적색</p>  <p>기타약제 : 바탕색은 백색</p>	 
‘농약’ 표기	‘농약’ 표기가 없음